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12일, 박수민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1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4.11.20.) 상정,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24.11.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수민의원)

분할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령연금을 이혼한 배우자 사이에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구법은 분할연금제도 수급 요건이 되는 혼인 기간을 ‘법률혼’ 기간으로 하였으나 2016. 12. 19. 2015헌바182 결

정에 따라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된 신법에서는 그 기간을 ‘사실혼’ 기준으로 변경하였음. 이는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게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임.

그런데 해당 조문 개정 시 ‘법률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법률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는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이 평등원칙을 위반한 위헌으로 보았음.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분할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경우에는 노령연금 분할을 청구할 전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인 경우와 후인 경우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후인지와 같은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일(2016년 12월 29일)부터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일(2018년 6월 19일)까지의 기간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2018년 6월 20일 이후 발생한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해서도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위헌적인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개정안은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일(2016. 12. 29.)부터 개정규정 시행 전날(2018. 6. 19.)까지의 기간에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2018년 6월 20일 이후 발생한 분할연금 수급권(소송에 따라 분할연금 지급권 변경에 관한 처분이 확정된 수급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지급된 급여의 환수에 대해서는 제57조 및 제5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이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일 이후 개정규정 시행 전일까지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신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소송에 따라 분할연금 지급권 변경에 관한 처분이 확정된 수급권’의 범위와 이미 지급된 분할연금 급여의 환수에 관한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개정안의 내용을 채택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